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9월 19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19. 9.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장종연)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정비
(안 제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5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조문을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41 호
----------	---------

제출연월일: 2019.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범위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정비
(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19. 8. 8. ~ 8. 14. / 5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 ----- -----, 장애정 도, ----- -----.